

경 영 (수 시) 공 시

본 수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 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◀ 아 래 ▶

1. 공시사유: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5조 제2호에 의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요구(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제3항제5호)

2. 공시대상

- 대 상 : 직원 김 ○○외 2명
- 사유발생일자 : 2017.07.11
- 경 위 : 조합감사2016-252, 인사위원회(2017.07.11.)
“참조기 운송 및 고용계약업무 부적정”
- 주 요 내 용 : 직원에 대한 징계
 - 전 1급 김○○ “견책”
 - 전 2급 김○○ “견책”
 - 3급 홍○○ “견책”
- 수지에 미치는 영향 : 수지에 미치는 영향 없음.

성 산 포 수 산 업 협 동 조 합

